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 인력 3명(6급 3명) 및 소속기관 인력 1명(7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2일에서 2024년 12월 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, 관세청 인력 1명(6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2년 12월 2일”을 “2024년 12월 2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